

**제2645호**  
**2019. 3. 2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공 고

제2019-241호 :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 2  
 제2019-246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  
 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41호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9년 03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 발생한 재난은 총 5회로 대형화재 등이 발생하였으며 지원내용으로는
  - 화재 발생에 따른 포클레인, 굴삭기, 청소차 등을 동원하였으며,
  - 적십자사 구호물품지원 및 화재현장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안전관리자문위원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주변 기타 위험시설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4개과 총 331명을 구성·정비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7종으로 3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개소 감소하였습니다.
  - 방재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은 22개 교육에 276명이 교육 받았습니다.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은 3회 총 62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해보다 15명이 증감하였습니다.
  -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17종으로 16,659명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1,235백만원으로 1,235백만원이 확보되어 100%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3년간 평균 1,108백만원 보다 127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6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3년 평균 760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5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6백만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1등급으로 지난해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5단계 상승 하였습니다..
  -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 그 밖에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은 이중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완료하였습니다.
- ◆ 재난관련 현장홍보 실적은 총 4건으로 1,243명이 참석하였으며,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은 총 15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24건보다 9건 감소하였으며, 지난해보다는 13건 감소하였습니다.
-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총 14개로 작성·운용하고 있으며, 14개 모든 매뉴얼의 연락처 및 대응 프로세스를 개정 및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 ◆ 그 밖에 기타 자세한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대해서는 세부 공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발생 장소	피해내용	복구내용	비고
2018.02.22.	을지로3가 68-16 해창정공	-피해주택 : 단독작업장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20,000만원 (부동산 8,000만, 동산 12,000만)	-동원인원 : 135명 (소방125, 경찰7, 헌전2, 구청2) -장비지원 : 36대	
2018.04.14.	동호로17길 주택화재	-피해주택 : 다세대빌라 -인명피해 : 없음(자력대피4명) -재산피해 : 36,000천원 (부동산 9,000만, 동산 27,000만)	-자력대피자를 위한 인근경로당 임시거처마련	
2018.05.29.	충무로4가 주상복합 화재	-피해주택 : 주상복합 -인명피해 : 부상1명 -재산피해 : 10,000만원 (부동산 5,000만, 동산 5,000만)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적재함내 종이박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의용소방대 현장동원	
2018.11.01.	청구동 봉제작업장 화재발생	-피해주택 : 봉제작업장 -인명피해 : 경상1명 -재산피해 : 9,500만원 (부동산 2,500만, 동산 7,000만)	-화재현장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주변 주민들에게 마스크 배부	
2018.12.22.	소공동 고시원 화재	-피해주택 : 주상복합 -인명피해 : 부상1명 -재산피해 : 10,000만원	-소공동 경로당 임시거처마련 -재해구호물품 긴급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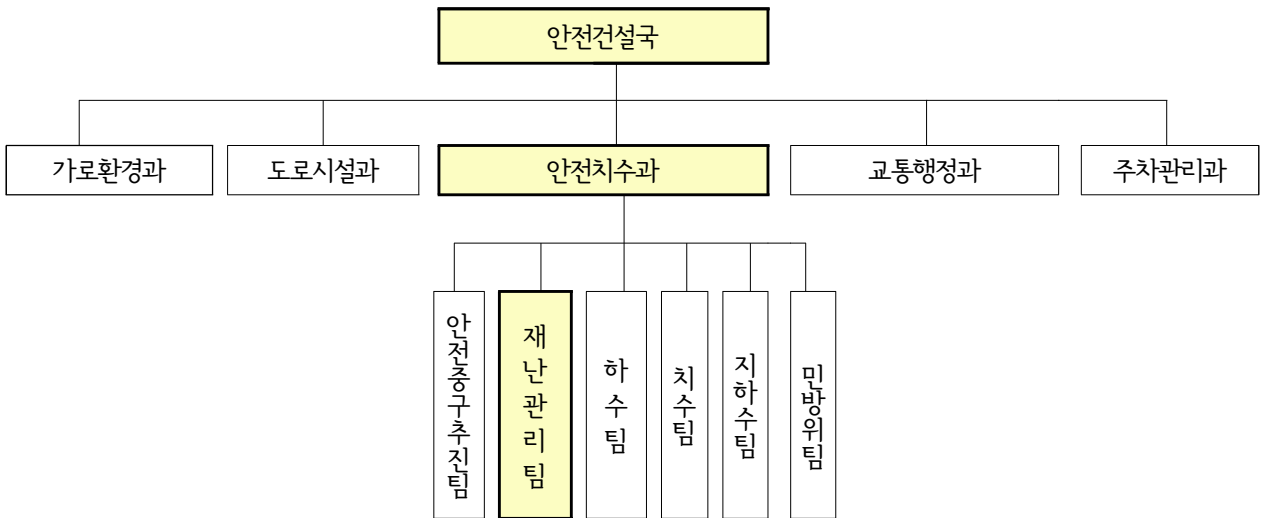
※ 작성대상 : 복구계획서 수립 또는 재난의 발생에 따른 수습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 재난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 재난총괄부서 : 안전치수과 재난관리팀



◆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재난유형	재난대비·관리부서
풍수해대책	안전치수과
설해대책	도로시설과
가뭄대책	안전치수과
지진대책	안전치수과
교통사고(재난)	교통행정과
도로재난	도로시설과
전기·수질·가스·유해화학물질 재난	환경과
건축물 등 시설물	건축과, 주택과, 도심재생과 등 시설물 관리부서
정보통신 재난	전산정보과
산불·산사태 방지	공원녹지과
공연장 사고	문화관광과
구제역·조류독감	시장경제과
감염병	건강관리과
복지시설 재난	사회복지과
보건의료마비	의약과

### 나. 정원 (2018. 1. 1.기준)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346	346	1	14	64	105	95	45	22
	현원	331	331	1	14	86	110	63	31	26
안전치수과	정원	32	32	-	1	5	8	10	6	2
	현원	28	28	-	1	7	9	5	4	2
도로시설과	정원	27	27	-	1	4	7	6	9	
	현원	26	26	-	1	8	10	4	3	
교통행정과	정원	27	27	-	1	5	6	9	4	2
	현원	28	28	-	1	6	15	4	0	2
환경과	정원	19	19	-	1	5	8	4	1	
	현원	18	18	-	1	5	8	1	3	
건축과	정원	25	25	-	1	6	8	6	3	1
	현원	24	24	-	1	6	7	4	5	1
주택과	정원	22	22	1	1	4	10	4	2	-
	현원	20	20	1	1	4	6	6	1	1
도심재생과	정원	21	21	-	1	3	6	7	2	2
	현원	21	21	-	1	5	5	6	3	1
전산정보과	정원	22	22	-	1	4	6	9	2	
	현원	21	21	-	1	7	7	6	0	
문화관광과	정원	23	23	-	1	6	9	7	0	
	현원	22	22	-	1	7	10	4	0	
시장경제과	정원	22	22	-	1	5	7	6	3	
	현원	27	27	-	1	7	11	5	3	
건강관리과	정원	31	31	-	1	4	8	13	2	3
	현원	30	30	-	1	11	3	5	4	6
사회복지과	정원	26	26	-	1	6	7	6	6	
	현원	23	23	-	1	5	7	7	3	
의약과	정원	26	26	-	1	4	10	4	0	7
	현원	23	23	-	1	5	8	3	0	6
공원녹지과	정원	23	23	-	1	3	5	4	5	5
	현원	20	20	-	1	3	4	3	2	7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일반직 현원(인원)	148	307	330	331



☞ 일반직 현원(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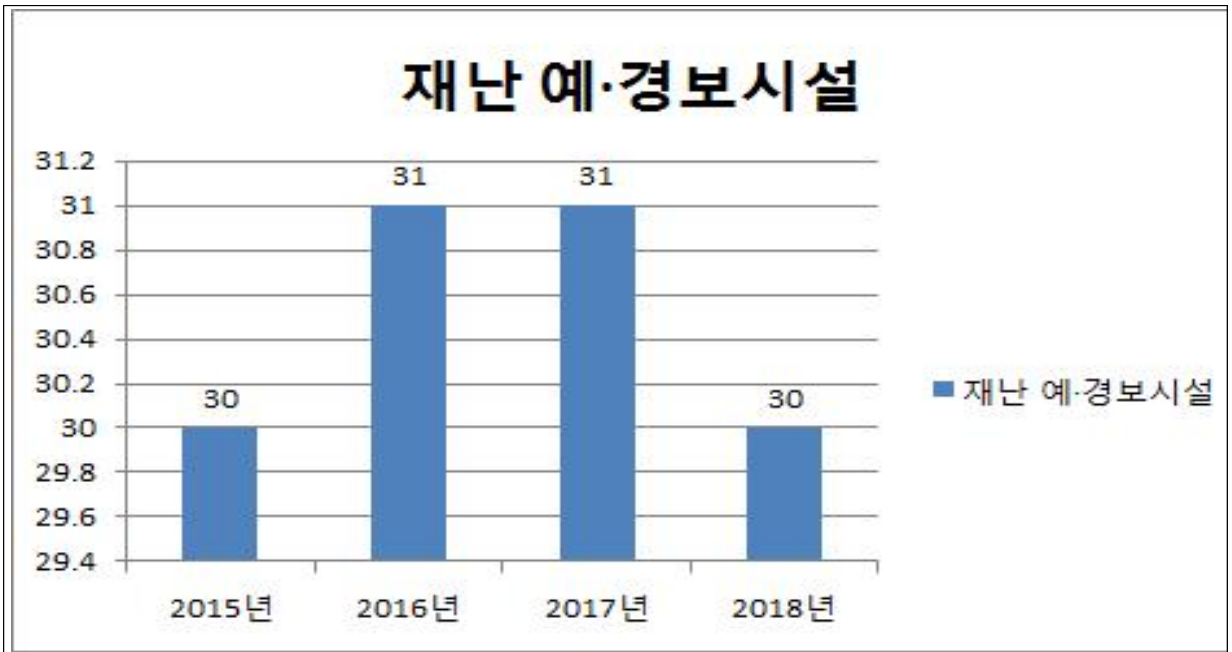
- 기존의 안전치수과로 국한되었던 조직을 해당 재난유형별 매뉴얼 담당부서로 조직 및 인원을 확대함에 따라 인원 증가
- 2013. 12. 1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일반직으로 통합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	필동 주민센터 외 8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	1	중구청 7층 옥상답
자동우량관측장비	1	중구청 5층 상황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0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1	중구 남대문로 10길 8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2	필동 2대, 장충동 4대, 예장동 2대, 동국대 입구 2대, 한옥마을 2대
재해문자전광판	0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중구청, 약수동 주민센터, 서울역, 명동(회현동 프라임타워) 시청별관, 신당동(경찰 제1기동대)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0	
위성전화기	0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0	
기타(지진가속도계측기)	1	중구청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계	30	31	31	30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	9	9	8
자동우량경보시설	1	1	1	1
자동우량관측장비	1	1	1	1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0	0	0	0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1	1	1	1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2	12	12	12
재해문자전광판	0	0	0	0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6	6	6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0	0	0	0
위성전화기	0	0	0	0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0	0	0	0
기타(지진가속도계측기)	1	1	1	1



-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신당동 주민센터의 이전 공사로 인해 앰프통보시스템 해체 후 임시 철거상태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발전형안 워크숍	2018.1.25.~26.	행정안전부	1명	
제2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설계과정	2018.2.21.~23	행정안전부	1명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전기, 가스 안전교육	2018.03.19.	서울시	4명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방향 및 평가계획 설명회	2018.3.27.	행정안전부	1명	
기능연속성계획 수립교육	2018.05.01.~2	행정안전부	1명	
풍수해 수방시스템 직원교육	2018.04.05.	서울시	2명	
제2기 공공분야 기능연속성과정 교육	2018.5.1.~2..	행정안전부	1명	
돌봄공무원 및 수방근무자 수방교육	2018.05.10.	중구청	137명	
침수취약가구 돌봄공무원 교육	2018.5.24.~25.	서울시	40명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교육	2018.05.29.	서울시	1명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 교육	2018.06.05.	행정안전부	1명	
내진보강사업 실무교육	2017.06.28.	행정안전부	3명	
서울지역 대테러 관계기관 교육	2018.07.01.	서울시	1명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교육	2018.06.18.~20.	서울시	7명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교육	2018.06.18.	서울시	2명	
국가안전관리계획 교육	2018.07.16.~17.	행정안전부	1명	
통합지원본부 운영 관계자 교육	2018.07.13.	서울시	1명	
재난배상책임보험 담당자 관리시스템 교육	2018.07.12.	행정안전부	5명	
지역안전도 진단관련 설명회 교육	2018.09.18.	행정안전부	1명	
제1기 방재안전직렬 심화과정 교육	2018.11.7.~9.	행정안전부	1명	
자연재난 대응 지자체 워크숍	2018.11.20.~21.	행정안전부	1명	
재난관리평가 지침 교육 설명회	2018.12.10.	행정안전부	1명	



###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018.04.10.	경기 화성 라비돌리조트	2명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강화교육	행정안전부	
2018.05.16.	농협중앙회	10명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구청	
2018.9월	미래에셋 센터원	50명	전국자율방재단 양성교육	중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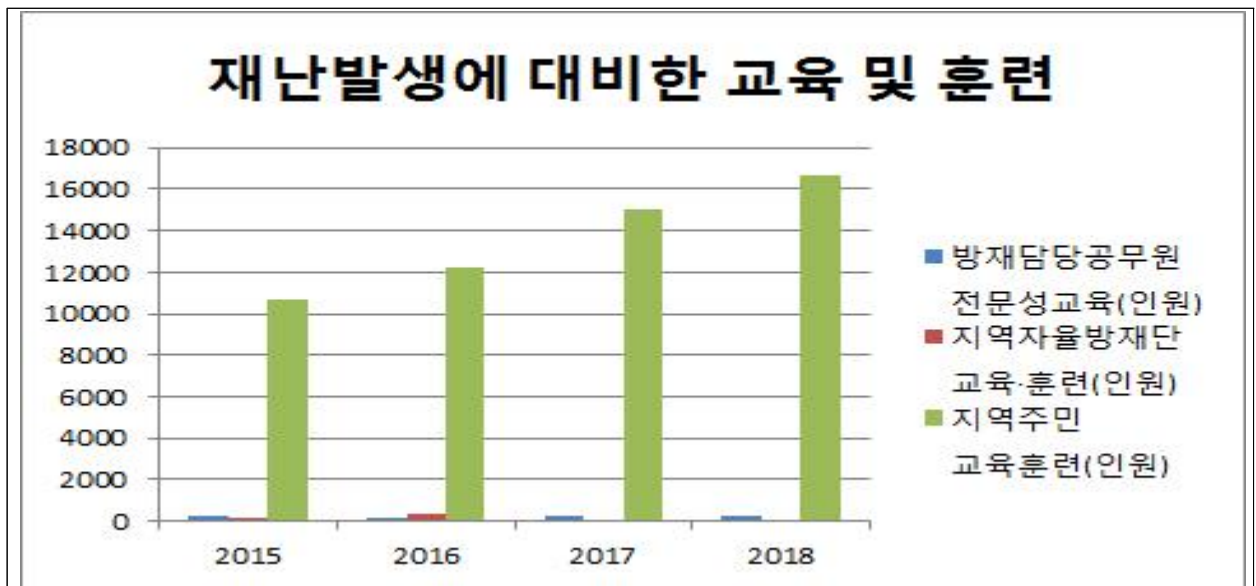
### 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찾아가는 순회 재난안전교육	2018년 3월~11월	산청기관 강당 등	7,096	재난안전교육	중구청 안전치수와	
감염예방법	5.15	명동CGV	350	집단생활 시 감염예방법	보육교사협회	
감염예방법	5.25	남대문경찰서	100	집단생활 시 감염예방법	남대문경찰서	
감염예방법	5.31	중부경찰서	90	집단생활 시 감염예방법	중부경찰서	
감염예방법	8.31	중구청 대강당	68	의료관련감염병 예방법	건강관리과	
에이즈예방	3.9	장충고등학교	500	에이즈예방	대한에이즈예방 협회	
에이즈예방	5.17	성동공업고등학교	300	에이즈예방	대한에이즈예방 협회	
에이즈예방	5.30	한양중학교	220	에이즈예방	대한에이즈예방 협회	
에이즈예방	9.5	환일중학교	170	에이즈예방	대한에이즈예방 협회	
에이즈예방	10.19	대경상업고등학교	600	에이즈예방	대한에이즈예방 협회	
에이즈예방	11.5	환일고등학교	537	에이즈예방	대한에이즈예방 협회	
에이즈예방	11.22	금호여자중학교	378	에이즈예방	대한에이즈예방 협회	

에이즈예방	11.26	한양공업고등학교	950	에이즈예방	대한에이즈예방 협회
결핵	5.15	어린이집68개소	921	결핵 및 잠복결핵의 이해와 검진의 필요성	대한결핵협회
결핵	-	학교40개소	1,744	결핵 및 잠복결핵의 이해와 검진의 필요성	대한결핵협회
결핵	-	의료기관4개소	2,542	결핵 및 잠복결핵의 이해와 검진의 필요성	대한결핵협회
결핵	-	사회복지시설 7개소	93	결핵 및 잠복결핵의 이해와 검진의 필요성	대한결핵협회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275	188	274	276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118	307	47	62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10,675	12,265	15,014	16,659



-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 기간연장
- 재난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체재난 교육실시 증대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고
		완료	진행	불가	
35	156	156	-	-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 날	홍보 리플릿 및 잔단지 배부 동 주민센터 전광판 홍보	매월 4일 (4~12월)	관내 유동인구 많은 지역	272명	-
2	안전문화캠페인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	1~3분기	관내 주변	371명	-
3	손씻기 캠페인	올바른 손위생 법	6.16	약수역 일대	400	
4	손씻기 캠페인	올바른 손위생 법	6.21	황학동 중앙시장	200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일시	언론사	비고
1	칼바람 막는 '온기통'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온기통'	2018.01.04	문화일보 외 17	
2	지진복합재난 현장훈련	강진 대비 단계별 훈련	2018.05.14	시민일보	
3	도심 침수 걱정 줄인다	필동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2018.07.11	뉴시스 외 16	
4	끝 모를 폭염과 사투 나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2018.07.25	헤럴드경제 외 12	
5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폭염 대비 장치 설치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부착	2018.07.26	연합뉴스 외 12	
6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에 얼음조끼 지급	공공근로자 얼음조끼 지급	2018.07.27	문화일보 외 6	
7	폭염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	취약계층 여름나기 물품 지원	2018.08.01	뉴스1 외 8	
8	작은도서관에서 더위나기	작은도서관 무더위쉼터 지정	2018.08.02	서울신문 외 9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일시	언론사	비고
9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수집 어르신 긴급 지원	2018.08.09	세계일보 외 19	
10	도심 식히기에 물 뿌려	도로 살수량 지난해 4배	2018.08.17	헤럴드경제 외 16	
11	여기는 지진 와도 끄떡 없어요	지진안전성 표시제 설치	2018.08.29	아시아경제 외 15	
12	폭염재난, 초보구청장의 고군분투기	폭염 대비 행정력 동원	2018.09.20	시민일보 외 2	
13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전 직원 화재취약시설 2300곳 안전점검	2018.11.14	서울신문 외 16	
14	한파종합대책 시행	더 좋아진 온기텐트 설치	2018.11.20	한겨레 외 14	
15	화재 취약 저소득 세대에 소화기 배부	기초수급자 등 218세대 가정용소화기 배부	2018.12.27	한국일보 외 16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케이블방송 포함

구 분	2015	2016	2017	2018
현장홍보실적(인원)	4460	3,826	1,358	1,243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19	27	28	15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기고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각종 자연재난(폭염, 미세먼지 등) 특보로 인해 현장홍보 등 안전 캠페인 홍보일수 감소

###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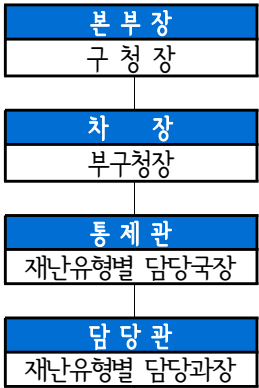
#####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구청장</li> <li>• 부위원장 : 부구청장</li> <li>• 위원 : 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li>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li> <li>•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li> <li>•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지역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li> <li>•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중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11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부구청장</li> <li>• 부위원장 : 안전건설국장</li> <li>• 위원 : 2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li> <li>•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li> <li>• 지역축제관련 심의</li> </ul>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	같은 법 제 7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단 : 29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시설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li> <li>•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li> <li>•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에 관한 사항</li> </ul>
중구재난안전 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장 : 중구청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중구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ul>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li>• 중구청장 → 서울시장 →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li> </ul>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 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 시장·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행정 기관에 신고</li> </ul>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시료부반 V

△ 주관부서 V

△ 지원부서 V

① 재난 상황 관리	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	③ 긴급 통신 지원	④ 시설 응급 복구	⑤ 에너지 기능 복구	⑥ 재난 자원 지원	⑦ 교통 대책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	⑩ 자원 봉사 관리	⑪ 사회 질서 유지	⑫ 수색 구조 구급	⑬ 재난 수습 홍보
안전치수과	복지지원과	정산정보과	건축과	환경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의약과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중부·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공보실
건축과 등	사회복지과	KT 중앙지사	주택과·공원녹지과 도로시설과	YES'CO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전력 한국전기 안전공사 중부수도 사업소	청소행정과 도로시설과	주차관리과 도로시설과 중부 남대문경찰 서 서부도로사 업소	건강도시과·위생과	환경과	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 안전치수과·3537부대	건축과·안전치수과	전산정보과

##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치수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복지지원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청소행정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전산정보과)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축과)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환경과)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공보실)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치수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행정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의약과, 건강관리과)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자치행정과)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중부·남대문경찰서)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중부소방서, 의약과)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구분		실무반	주요업무
1단계	상향총괄반 교통대책반 재난홍보반 구조구급반 자원지원현장복구반	상황총괄반	• 재난상황관리 및 전파 총괄 등 • 하천, 하수도, 산사태관련 모니터링 및 복구
		교통대책반	• 도로·교통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 등
		재난홍보반	•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지원, 왜곡정보 대응
구조구급반		• 119 피해신고 및 재난상황 전파	
2단계	자원지원현장복구반	자원지원현장복구반	• 재난현장 장비, 자재, 물자 지원 및 도로함몰침수, 산사태, 복구 등
		통신지원반	• 통신시설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 등
		시설복구반	• 주택 등 건축물, 공장, 소상공 등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등
		에너지복구반	• 가스, 전기, 유류 등 라이프라인 피해복구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수해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 등
		생활지원반	• 이재민 주거 및 구호시행 등 • 이재민 심리안정지원, 구호기금 운영
3단계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의료방역반	• 재난지역 의료 및 방역 등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등
		질서협력반	• 군경 및 민방위 등 복구협력 지원
		행정지원자원봉사반	• 대책회의 개최 등 행정지원 • 자원봉사자 관리 지원, 각 동 행정지원 등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담당자	전화번호
중구청	안전치수과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사후대책	백응현 02-3396-6142
	의약과	○ 현장응급의료 운영, 환자이송, 관리,	이영미 02-3396-6404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 가스탐지, 안전진단, 응급복구 및 사고요인 조사	최성원	02-2038-3858
남대문 경찰서	○ 폴리스라인 설치, 주민소개, 사고원인조사 및 인명구조 및 병력투입	김상균	02-2096-8359
중부경찰서	○ 폴리스라인 설치, 주민소개, 사고원인조사 및 인명구조 및 병력투입	김재성	02-3396-9262
중부소방서	○ 탐지, 제독, 화재진화, 사고원인조사	김준석	02-2237-1194
한국전력공사	○ 전기사고 안전점검	김종현	02-758-3272
(주)에스코 도시가스	○ 가스안전점검	이무정	02-2210-7546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전기사고 안전대책	한재원	02-6902-4756
KT중앙지사	○ 사고현장 통신 안전대책	상황실	02-775-0060
육군제3537부대	○ 사고현장 불순분자 색출, 주변경계, 인명구조	김일영	02-382-8113

##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조례	중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96.12.26.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 자문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2005. 3.25.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05. 5. 31.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2005. 6. 27.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2005. 9. 5.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08. 4. 4.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구 지역사회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0. 9. 15.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	2014. 3. 5.	
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4. 3. 5.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015. 10. 07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7. 12. 27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위치	지정현황(일자)	비고
병·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을지로 245	2007.09월 기준	

※ 관리기관에 관계없이 관할지역에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시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2018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중구관내	하수관 부설 D300~D900mm, L=599m 맨홀 설치 및 개량 N=27개소	2018.3.1. ~2018.12.19.	1,154	재해방지
세종대로 외 1개소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세종대로 58외2개소 ~ 세종대로 76-1외1개소	원형관 비굴착 전체보수 D=600~800mm, L=646.6m	2018.11.13. ~2018.12.20.	400	재해방지
황학동 756~2469-2번지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	황학동 756 ~ 황학동 2469-2	□1.8*1.8m, L=535m, A=1,369㎡	2018.3.2. ~2018.10.31.	530	재해방지
필동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6구역)	퇴계로36나길52 ~ 퇴계로36가길26	출관부설 (D450mm~D1200mm), L=1,076.0m 레진관부설 (D300mm~D500mm), L=574.10m	2018.2.19. ~2018.12.20.	1,851	재해방지
필동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7,8구역)	초동 32-4 ~ 필동1가 32-7	하수암거신설 (□1.2*1.5m~□1.8*1.5 m), L=474m	2018.3.1. ~2018.12.20.	4,460	재해방지
필동2가 84-90~84-1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	필동2가 84-90~84-1일대 외 2개소	단면보수 및 철근노출 단면보수 1263㎡	2018.4.10. ~2018.7.28.	400	재해방지
남학동 18-1~13-1번지 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	남학동 18-1 ~남학동 13-1	(2-1구간) □1.6*1.5 L=69.5m, □1.5*1.5, L=78.5m, □1.3*1.5 L=156.0m (6-1구간) □1.5*1.2 L=45.0m	2018.4.16. ~2018.7.27.	600	재해방지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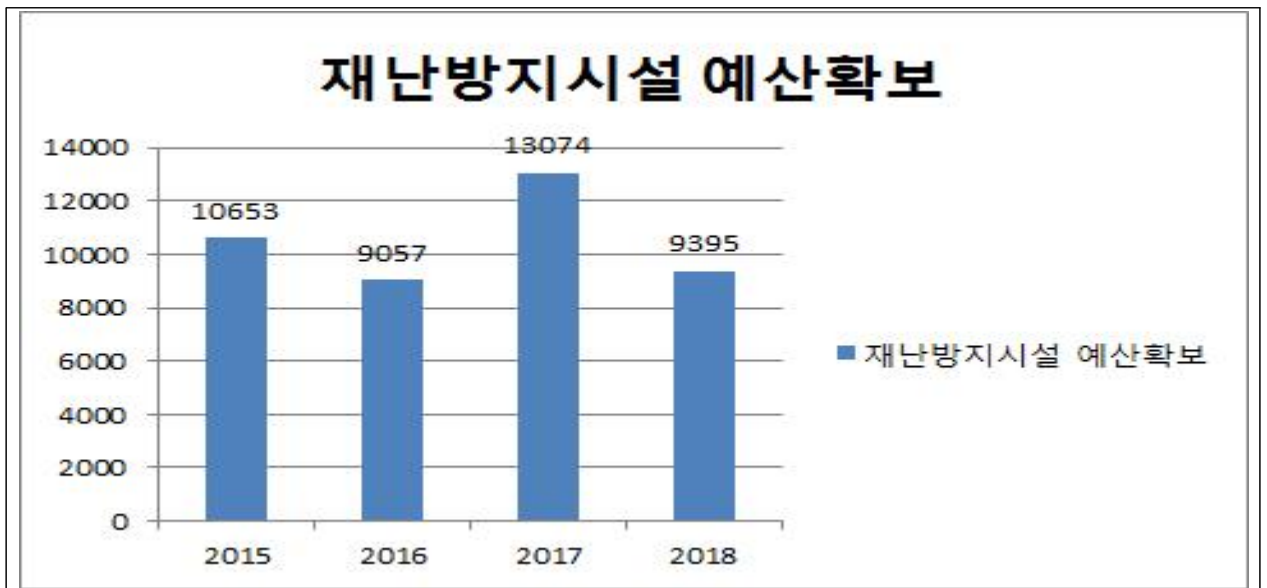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10,653	9,057	13,074	9,395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 및 감소 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재해방지를 위한 기존 보수·보강공사 사업추진 대상지 공사완료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웁스	유흡착제	흡착롤	유처리제	소석회	분말염소
		km	천매	km	kl	ton	kg
총계	100.572	-	0.5	-	0.072	-	100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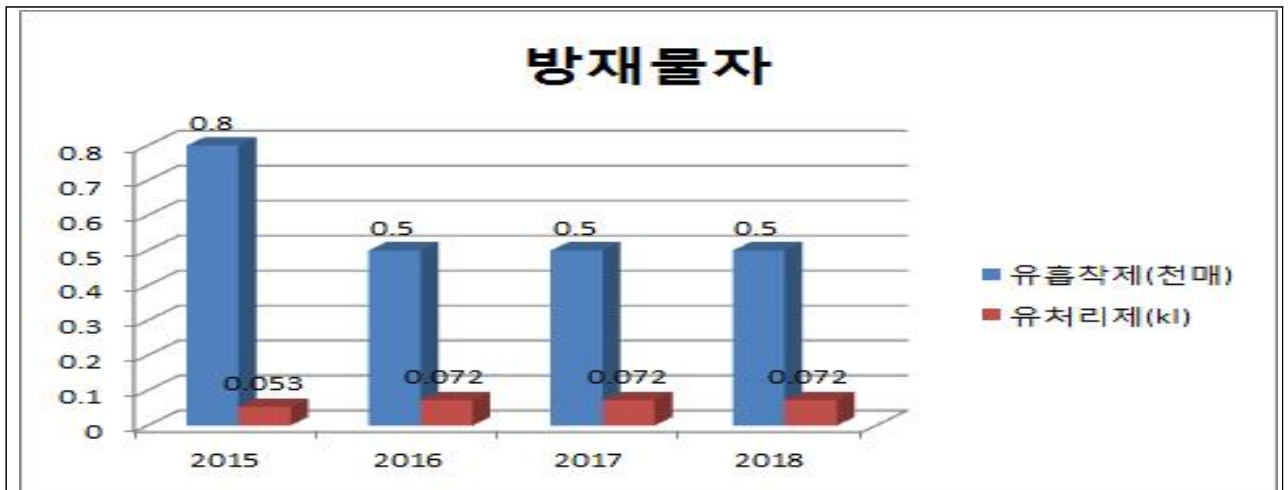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6	552	1,194	6	1,367	40
병 원	5	544	1,173	4	1,367	40
보건소	1	8	21	2	-	-

[수용시설]

구분	계		학 교		교 회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총계	36	20,029	11	16,533	5	969	9	758	3	281	8	1,488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5	2016	2017	2018
유흡착제(천매)	0.8	0.5	0.5	0.5
유처리제(kl)	0.053	0.072	0.072	0.072



☞ 방재물자 감소 및 확보의 증감원인 내용설명

- 유흡착제 및 유처리제의 미사용으로 인해 방재물자 수량 동일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의료시설수		6	6	7	6
수용시설	개소	17	29	29	36
	수용인원	15,735	16,612	16,612	20,029



-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각종 감염병 사고대비 의료시설 병원 1개소 추가지정
  - 수용시설 연계 경로당 등을 무더위 및 한파쉼터로 동일 지정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블도유저	덤프	로우더	견인차	청소차	기타
총계	50	-	3	0	3	1	4	33	6

※ 기타 : 다목적 차량, 도로 기동반 행정차량, 그 밖에 제설관련 복구장비 등

◆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헬기 보유	헬기 임차	산 불 진화차	동력 펌프	동력톱	휴대용 무전기	무선 기지국	차량 이동국	진화 도구	등짐 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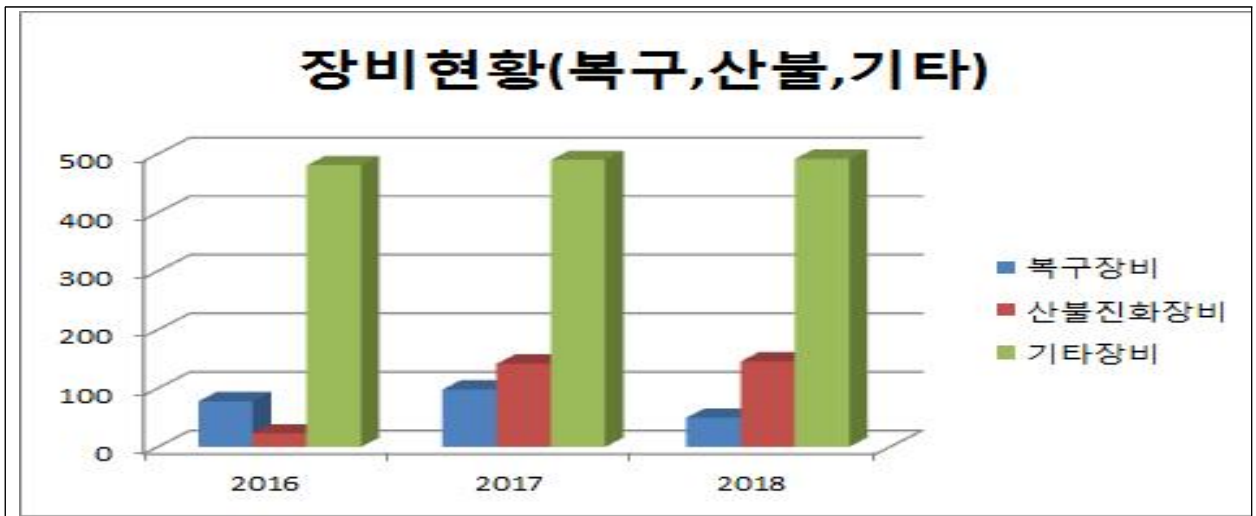
총계	146	-	-	1	2	5	0	0	0	130	8
----	-----	---	---	---	---	---	---	---	---	-----	---

◆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컴퓨터 레사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절단기	제독차	기타
총계	492	0	1	292	2	0	0	0	0	197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6	2017	2018
복구장비	78	98	50
산불진화장비	23	142	146
기타장비	481	490	492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협약장비 제외로 복구장비 감소 및 산불진화 도구, 기타장비 추가 현행화 작업 실시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방사능	기타
인원	287	50	31	5	21	-	18	3	4	155

◆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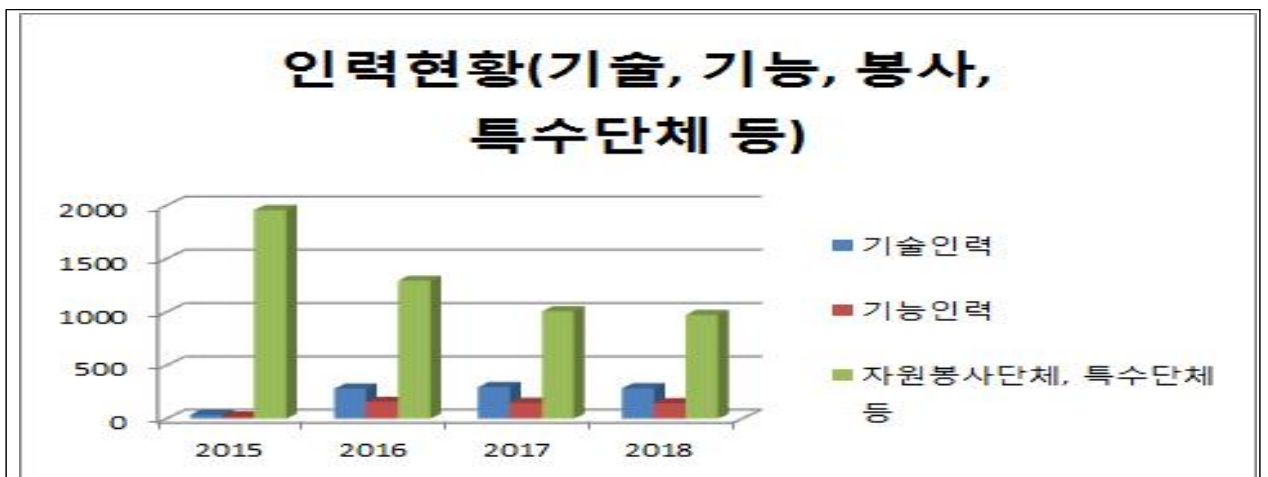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배관공	기타
인원	147	43	7	3	-	-	9	-	-	85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수중 구조대	안전 감시단	기타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 전우회	모범 운전자회	기타 (병차단)
인원	975	194	0	0	35	-	149	12	100	284	209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5	2016	2017	2018
기술인력	37	282	297	287
기능인력	20	156	150	147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1,959	1,295	1,008	975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자격증 보유 인력 및 특수단체 등 해체로 인한 숫자감소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2018 안전한국훈련	2018. 05.08.~18.	행정안전부	B등급(보통)	
2018 재난관리실태 평가점검	2018.1.19.	행정안전부	보통기관	

**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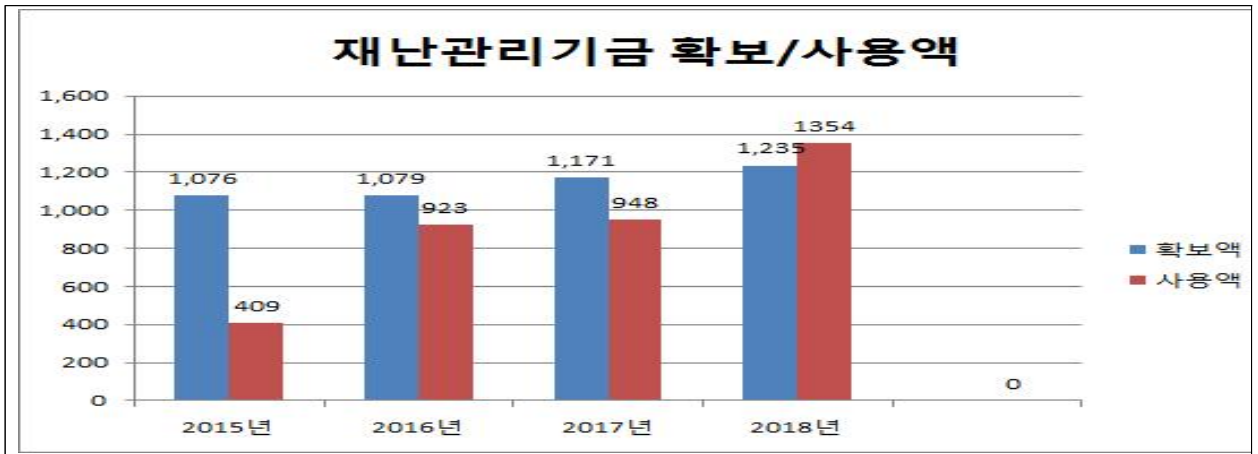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미 실시	이중마루 설치	-	
종합상황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1,235백만원	1,235백만원	1,235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확보액		1,076	1,079	1,171	1,235
사용액 총계		409	923	948	1,354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33	37	14	25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255	716	898	1,040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	111	160	26	279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0	10	10	10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및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 여름철 폭염대비 보도상 그늘막실퍼 및 한파대비 버스승차대 바람가림막, 한파실퍼 운영·설치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중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개정연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치수과	2018년	풍수해대응 프로세스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치수과	2018년	지진대응 프로세스
대형 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치수과	2018년	화산대응 프로세스
가뭄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안전치수과	2018년	가뭄대응 프로세스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안전치수과	2018년	댐붕괴 대비·대응 절차
산불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공원녹지과	2018년	산불발생 대응 프로세스
전력분야 마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 경 과	2018년	전력분야 마비 대응
유해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 경 과	2018년	유해화학물질 유출대응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 경 과	2018년	수질오염 대응절차
정보통신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산정보과	2018년	정보통신 마비 대응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강관리과	2018년	감염병 대응 프로세스
보건의료마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의 약 과	2018년	보건의료 마비 대응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치수과	2018년	대형화재 대응 프로세스
다중밀집건축물 붕괴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 축 과	2017년	건축물붕괴 대응·복구

### [중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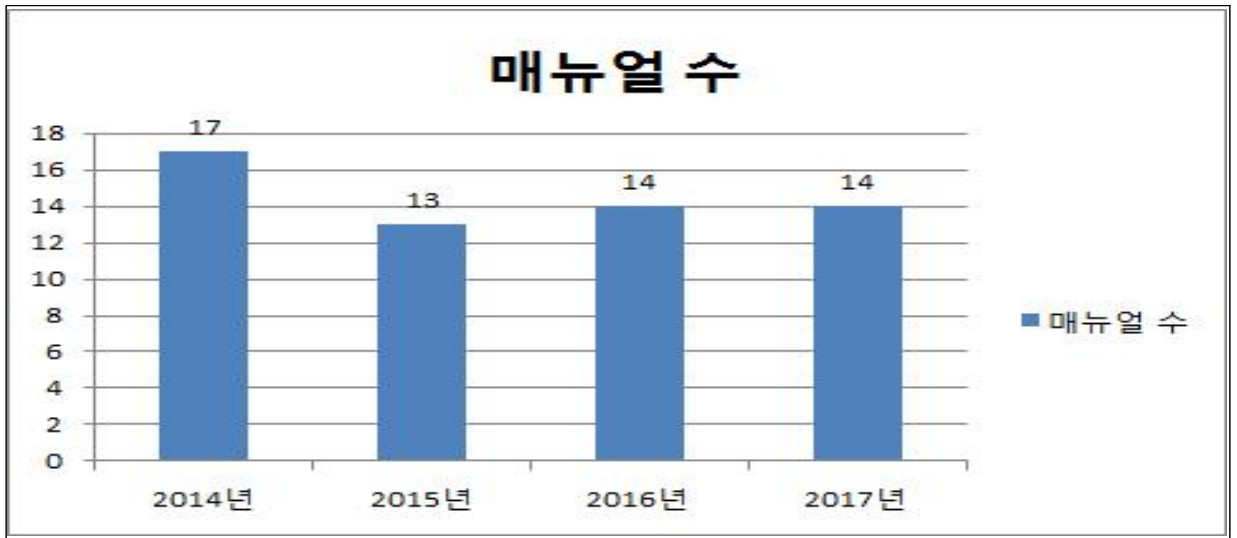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지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대형 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가뭄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산불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전차궤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유해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정보통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보안사고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다중밀집건축물 붕괴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03.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세스 현행화	

### [중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02.02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ICTC 합동훈련	연락처 및 정보관리체계 일원화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04.02	민·관·군 재난대응훈련	통합지원본부 운영 내실화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5.18	풍수해 대비 주민안전 현장합동훈련	주민의 자발적 재해예방활동 활성화 도모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10.31.	긴급구조종합 지원훈련	다수사상자 관련 의료진 지원	

###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매뉴얼 수	17	13	14	14



-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추가 작성
  - 실제 우리구에서 활용 가능한 법정매뉴얼 대상 집중 현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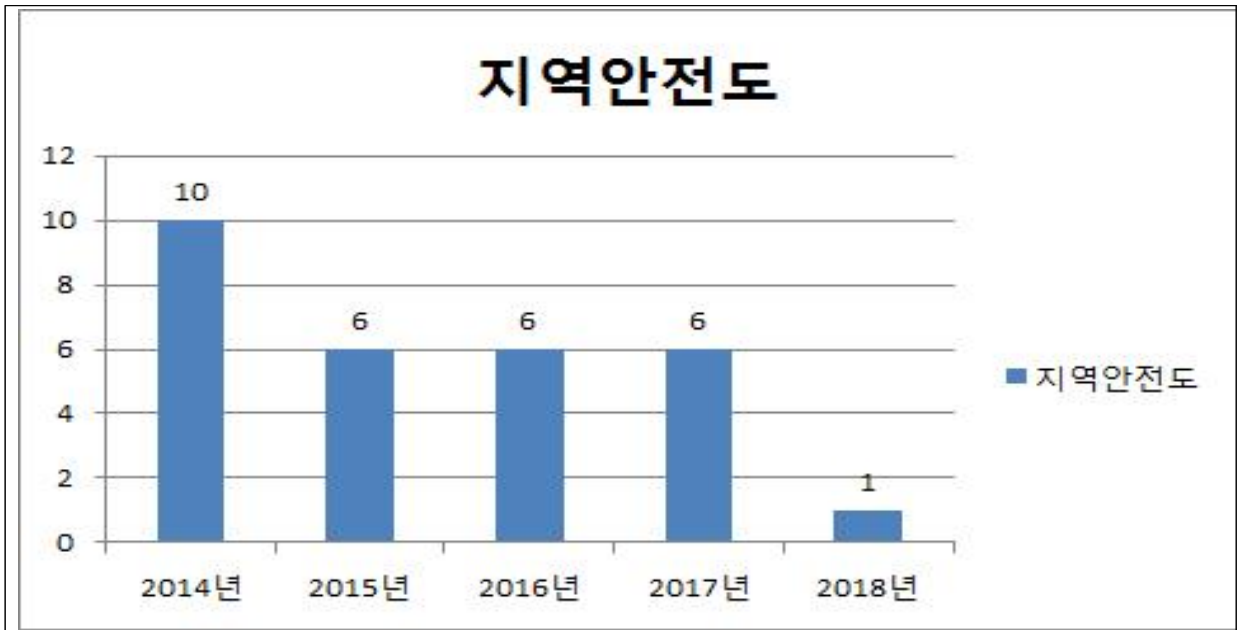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재해위험요인)	위험관리능력 (예방대책추진)	방재성능 (예방시설정비)	안전도 지수	등급(그룹)
진단결과	0.161	0.910	1.000	0.185	1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등 급	10	6	6	6	1



-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전년도 지역안전도 등급대비 안전지수 5단계 향상(※안전도지수 증감)

##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파대비 생활밀착형 바람가림막 설치·운영

- 사업기간 : 2018. 11월 ~ 2018. 3월 초
- 설치수량 : 21개
- 총사업비 : 21,000천원(재난관리기금)
- 설치장소 : 광고판이 없는 버스승차대 중 바람가림막 설치로 통행 등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

구분	필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
계	1	1	2	4	3	4	1	2	3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중구 생활안전담당관 [담당자 : 김성태, 전화 : 02)3396-447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46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리 구 조례 중 공공시설·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 등 결제 시 감면(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 10% 이내 할인(감면) 규정 마련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할인(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기한 규정

연번	자치법규 명	개정 내용	비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제10조제5항관련)”에 감면 내용 추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 감면	조례안 제2조
2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제9조(수강료의 감면)에 항목 추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수강료의 100분의 10감면	조례안 제3조
3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사용료 및 강습료(제8조제3항)”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시 1. 청소년복지시설 사용료 5% 할인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10% 할인 추가	조례안 제4조
4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8조제5항 신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이용료의 100분의 10감액	조례안 제5조
5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수강료의 100분의 10감액	조례안 제6조
6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의2(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신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수수료 및 진료비의 10% 감면	조례안 제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전통시장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02-3396-5045, F AX:02-3396-8680, 메일:jj66ga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우리 구 조례 중 공공시설·프로그램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감면(할인)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는 100분의 10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여 수강료를 납부하는 자는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여 수강료를 납부하는 자에게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①「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제9조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④「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8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⑤「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제3조의2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

□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분	단위	대상	상한금액
사용료	1시간	다목적회의실, 사랑방 등	10,000원
수강료	월	프로그램 이용자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 일반강좌)	30,000원

※ 사용료 징수기준은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를 가산한다.

※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구분	감면비율	대상	비고
사용료	100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50	· 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사용료 및 수강료	10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 · 소년·소녀가장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등록된 장애인 · 경로우대자(65세이상)	
	10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 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1. 청소년복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상	1회사용료 (1시간기준)	월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체육관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공연장대관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5,000				
강의실 프로그램실	-	인근 유사 시설 준용	기본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비  
고

1. 시설대관 외 기타물품 사용시 추가비용 발생함(프로젝트, 음향 등 대여료)
2. 사용료 할증
  -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3) 시설 1회 사용료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초과 시에는 30분 단위로 50%씩 할증하되, 30분단위 미만 사용은 30분 단위 사용으로 본다.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 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
  - 2) 1일 2개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 할인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중구 또는 서울시 소재)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상	월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외국어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초·중·고생, 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음악·예술· 체육·정보·과학 등	대학생, 성인	39,000	61,000	77,000	91,000	106,000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유아반	내용, 강사 등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취미·교양·문화	대학생,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초·중·고생, 어린이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상 담	각종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책정				
청소년사업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내용, 강사, 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				
비 고	<p>1. 프로그램 영역 구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영역</li> <li>2) 음악·예술·체육 : 음악(보컬, 악기),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댄스 등</li> <li>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li> <li>4) 취미·교양·문화 : 외국어,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 프로그램을 제외한 영역</li> <li>5)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등</li> <li>6) 청소년사업 : 캠프, 동아리·봉사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공모사업등</li> </ol> <p>2. 사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li> <li>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 액의 30% 할인</li> <li>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강습료의 10% 할인</li> </ol> <p>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p> <p>4.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p> <p>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p> <p>6. 프로그램 특성상 상한을 초과하는 강습료가 발생할 경우, 타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강습료를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b>			
[별표]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구분	감면비율	대상	
사용료 및 수강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수급자</li> <li>· 저소득 모·부자가정</li> <li>· 소년·소녀가장</li> <li>·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li> <li>· 등록된 장애인</li> <li>· 경로우대자(65세이상)</li> </ul>	
	<u>&lt;신설&gt;</u>	<u>&lt;신 설&gt;</u>	
구분	감면비율	대상	
사용료 및 수강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수급자</li> <li>· 저소득 모·부자가정</li> <li>· 소년·소녀가장</li> <li>·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li> <li>· 등록된 장애인</li> <li>· 경로우대자(65세이상)</li> </ul>	
	10	<p><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u></p>	
		부 칙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현 행	개 정 안
<b>「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b>	
<p>제9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전액</li> <li>2.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교실 수강료의 100분의 50.</li> </ol>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lt;신 설&gt;</p>	<p>제9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전액</li> <li>2.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교실 수강료의 100분의 50.</li> <li>3.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는 100분의 10.</u></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교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교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p> <p>제3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p>

현 행	개 정 안				
<b>「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b>					
<p>[별표2]사용료 및 강습료(제8조제3항)</p> <p>1. 청소년복지시설 사용료</p>	<p>[별표2]사용료 및 강습료(제8조제3항)</p> <p>1. 청소년복지시설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비 고</td> <td style="padding: 10px;"> <p>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p> <p>: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p> <p>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p> <p>2) 1일 27시간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lt;신 설&gt;</p> </td> </tr> </table>	비 고	<p>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p> <p>: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p> <p>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p> <p>2) 1일 27시간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lt;신 설&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비 고</td> <td style="padding: 10px;"> <p>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p> <p>: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p> <p>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p> <p>2) 1일 27시간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4)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 할인</u></p> </td> </tr> </table>	비 고	<p>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p> <p>: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p> <p>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p> <p>2) 1일 27시간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4)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 할인</u></p>
비 고	<p>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p> <p>: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p> <p>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p> <p>2) 1일 27시간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lt;신 설&gt;</p>				
비 고	<p>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p> <p>: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p> <p>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p> <p>2) 1일 27시간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4)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 할인</u></p>				

현 행		개 정 안	
[별표2]사용료 및 강습료(제8조제3항)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별표2]사용료 및 강습료(제8조제3항)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비 고	2. 사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별 강습료 액의 30% 할인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lt;신 설&gt;</p>	비 고	2. 사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 액의 30% 할인 3)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 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강습료의 10% 할인</u>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할인 적용 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 행	개 정 안
<b>「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b>	
<p>제28조(이용료 등) ①~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lt;신 설&gt;</p>	<p>제28조(이용료 등)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 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여 수강료 납부하는 자는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현 행	개 정 안
<b>「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리자 설치 및 운영 조례」</b>	
<p>제14조(수강료등 감면) ①~② 생략</p> <p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4조(수강료등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여 수강료를 납부하는 자에게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lt;신 설&gt;</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현행과 같음)</p> <p>제3조2(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할인(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3조2의 신설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